

의 안 번 호	제 1 호	심 의 안 건
심 의 연 월 일	2021. 12. 24. (제 26차)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 연월일	2021. 12. 24.

1. 보고 배경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계획 수립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기 수립·시행 (‘16.2.3.)
-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숙인의 상황과 욕구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응체계 중심으로 제2차 계획 수립

◆ (1차 종합계획) 예방-재활-자립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제2차 종합계획) 거리현장, 주거·의료·복지 분야별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2. 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개요)

- 거리·시설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 일시집계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실시

* 생활실태, 심리·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일시집계조사 노숙인 등 중에서 1,700명(표본) 대상

구분	노숙인 등 전체 합계	노숙인 합계	거리 및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합계	거리	이용시설	합계	자활	재활	요양	
2021년 전국	14,404 (100.0)	8,956 (62.2)	1,595 (11.1)	1,201 (8.3)	394 (2.7)	7,361 (51.1)	1,107 (7.7)	3,343 (23.2)	2,911 (20.2)	5,448 (37.8)
2016년 전국	17,532 (100.0)	11,340 (64.7)	2,015 (11.5)	1,522 (8.7)	493 (2.8)	9,325 (53.2)	1,599 (9.1)	4,290 (24.5)	3,436 (19.6)	6,192 (35.3)

3. 제2차 계획 주요 내용(요약)

비전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5대 분야	①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②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③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④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⑤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개 과제	-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체계 구축 - 거리노숙 위기지원 서비스 강화	-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 -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 서비스향상 및 환경개선	- 노숙인 인권 중심 근거기반 정책 추진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역량 강화

①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_{복지}) 지자체의 거리노숙인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보호와 정신분야 전문영역 등 지원과 연계 구축
 - 거리노숙인 일정규모(40명*) 이상인 광역지자체는 방역 지원 및 응급 숙소·급식서비스 제공 등을 정부·지자체(광역)의 필수 역할로 명시
 - * 2021 실태조사 결과 서울부산 등 7개 시도 해당, 그 외 시도는 거리노숙 규모 0~18명
 - 노숙인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을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1. 6개소→'25. 85개소)로 확대,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기관('21. 9개소→'25. 17개소) 지정 확대
- (거리노숙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연계}_{지자체}^{복지}) 위기취약계층의 노숙진입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가정 밖 청소년의 노숙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강화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노숙위기 여성·청년에 대해 심리서비스 지원 연계
 - 빅데이터 기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노숙생활 진입 예방 강화
 - * 사각지대발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 확대(34개→39개), 지자체 자체 발굴 지원 등 차세대사업 추진중('20~'22년)
 - 지자체내 거리노숙인 '인권옹호관'을 지정(권고)하여, 방역 등에서 인권침해사항 발생 여부 등 점검·모니터링 책임 부여

②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_{복지})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및 노숙인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 강화 및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자원 배치
 -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공공병원 없는 지역은 민간 병원)로 지정 확대 추진,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 수행
 - 노숙인의 의료급여, 지정병원 이용 등 의료지원 활용 실태 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중요} ^{지자체}) 신종감염병 대비 등 관리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숙인 결핵관리사업 확대 및 안정적 정착 추진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과 연계한 예방접종 추진 및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 * 코로나19백신 홍보·이동 지원 및 노숙인시설 집단감염방지, 확진자 발생시 대응 등 지침 마련(예: 주거취약계층의 치료시설 우선 배치 등 명시)
-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과 사후관리를 통해 결핵검진·치료성공률 제고
 - * 노숙인의 경우, 전체인구의 4.3배의 결핵발생률(10만명 당 165.5명) 보고

3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지원 ^{중요} ^{지자체})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 지속 추진
-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 우선공급('20~'25. 4만호), 쪽방촌(서울역 등)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정비(약 2,500호)하여 공공임대 입주 지원
-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지자체} ^{복지}) 독립적인 주거와 복지 등 지원을 결합한 지원 모형 마련·확산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의 방향 제시
 - * (기존) 알코올 문제 등이 없는 대상 위주 → (변화) 정신질환·알코올·만성노숙 등을 경험하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원주택” 등 서비스-주거 결합(예)	
○ 서울시(지원주택)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등 독립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 - 주택 제공(원룸형, 매입임대주택) 및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건강·위생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 제공	○ 대구시(행복나눔의 집) - 쪽방 밀집지역 환경개선 및 자활·일자리 알선 서비스 제공 - 1개동에 세탁 등 편의시설(1층), 교육장·상담실(2층), 원룸주택(3층, 쪽방→매입임대주택 중간주택)

4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지자체 복지}) 지역사회 초기·재정착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 개별·맞춤형 지원 추진
 - 여성·청년 등 취약노숙인의 자립지원, 자존감 향상 등 사회재정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초기적응·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 노숙인 복지사업(공모)을 활용, 여성·청년 노숙인 등 지역사회 준비촉진 프로그램 발굴(22~)
-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고용 복지})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등 노숙인의 욕구와 상황에 기반하여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II)를 통해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대상 취업 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속 강화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확대로 거리노숙인이 시설 입소 등의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 (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지자체 복지}) 노숙인시설의 사회복귀 준비환경 조성 및 운영환경 개선
 - 소규모 자활시설의 표준 모형화 추진 및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5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노숙인 인권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복지}) 노숙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숙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추진
 -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 확대* 및 커리큘럼 마련 등 인권교육 내실화
 - * 현재 시설종사자로 한정된 인권교육 대상을 관련업무 종사자 등 점차 확대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지자체 민간 단체}) 노숙인 정책의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체계 구축 등 사업 역량 강화*
 - * (교육)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업무환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추진, 업무환경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

2021. 12.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11
II. 성과와 한계	12
III. 정책비전 및 목표	16
IV. 주요 정책과제	17
1.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17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21
3.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24
4.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7
5.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1
V. 성과지표	34
VI. 향후 실행방안	35
[붙임] 세부 추진과제	36

I.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1. 수립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계획 수립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기 수립·시행 (‘16.2.3.)
 - 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
 - 관계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는 해당 부처·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추진 경과

- 제2차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기획연구(‘21.2~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실태조사) 노숙인 등의 현황, 욕구 및 심리와 지원상황 파악을 위해 일시집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 * 제1차 노숙인 등 실태조사는 ‘16년 실시 (조사연구기간 ‘16.7월~‘17.6월)
 - (종합계획) 제1차 종합계획 성과 평가,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 주요정책 및 핵심과제 등 발굴
 - * 연구기간 중 의견수렴 위해 노숙인 관련협회 간담회 및 자문회의(10회) 실시
- 관계부처·지자체·협회 등 협의(‘21.10~11월) 및 공청회(‘21.12.13~17)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21.12월, 예정)

Ⅱ. 성과와 한계

1. 성과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 등을 통해 예방-지원-자활 등 단계적 접근으로 지원사업 체계화

□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 지원체계 확립

○ 고위험가구 발굴 및 복지급여·서비스 확대

* ('16~'20) 기초생활보장 18천여명, 차상위 4천여명, 긴급복지 19천여명, 기타공공 서비스 56천여명, 민간서비스연계 256천여명 등 35만여명 지원 완료

○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체계* 구축

* 노숙인 담당 공무원 등 대상으로 노숙인 이해도모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매뉴얼」 제작·배포('18)

□ [지원] 지역사회 복귀 기반 마련을 위한 노숙인 특성별 지원 체계 구축

○ (주거) 노숙인 등 대상 주거지원 물량 확대 및 노숙 특성을 고려한 지원주택 도입·활성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1,090호(비주택 거주민 포함) 공급 및 운영기관 통한 주거지원 466호로 지속 확대('16~'20)

* (서울시)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지원주택 제공 및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196호, '21.11월)

○ (의료) 의료접근성 향상 및 감염병 예방 지원과 정신질환 대응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확대 운영('16년 260개소→'20년 286개소) 및 노숙인 등 대상 결핵검진 사업 추진,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서울 등)

○ (고용) 거리노숙인을 포함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립 지원

* 공동작업장·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 연계 등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지원(서울시), 거리노숙인 특화사업으로 연200명 맞춤형 일자리 지원('19~, 복지부)

□ **[사회복지]** 노숙인 대상 상담·교육 등 제공을 통해 지역 재정착 유도

- 노숙인의 직업교육·재활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자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실시

* 100개 기관, 199개 사업(965백만원) 및 지자체 특성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19)

□ **[인프라]** 노숙인 인권보호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 수립·시행('16.9월)

* 생활시설 내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지자체, '17~)

-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숙인 인권지킴이단*의 법적 근거 마련('19.6월)

*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단 운영의 의무화

-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18)*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역량모델 연구·교육과정 개발 등('21.下)

*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1명→2명, '18)

- 매년 거리노숙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별 거리노숙 거점 리스트 구축 등 근거기반 정책 추진 기반 마련('16~)

□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등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추진

- 방역대응방안 수립('21.2월)* 및 백신접종을 제고 등을 위한 현장보호 활동 확대 실시('21.下)**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방안, 격리공간 확보방안, 보건소-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지자체(시·도)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자체, 민간협회 중심으로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안내 및 접종기관 이동 지원, 접종 후 연계 복지서비스 등 지원

2. 한계

◆ 노숙인 복지정책을 체계화했음에도, 지역별 정책 편차 발생 및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대응할 협의채널 부재 등 질적 향상 한계

□ **[예방]**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서 지역간 격차 발생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등 현장보호체계는 노숙인의 규모, 현황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원체계·개입 정도가 다양

□ **[지원]**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관련 정책 간 협의체계 등 부재로 노숙인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방안 추진에 한계

* (복지부) 다부처간 협의를 통한 종합·장기적인 노숙인 복지정책 마련 필요
(국토부)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제고 필요
(고용부)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강화 필요

○ 주거·의료·고용 등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응 노력 강화 필요

□ **[사회복귀]** 자활시설 노숙인 대상 교육 위주로 운영

○ 노숙인의 노숙계기, 노숙이전 주거변화, 시설 장기거주 등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귀 방안 마련 필요

□ **[인프라]** 노숙인 시설 운영 사무의 지방이양('22~)*으로 정책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대두

* 국고지원 시설인 재활·요양시설의 지방이양('22)으로 모든 노숙인시설 운영사무는 지방으로 이양(자활·일시보호·급식·진료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는 旣이양, '05)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긴급·임시 대응 위주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발생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시급

[참고] 제1차 계획 지표 달성수준 평가

① (거리노숙인 수) 지난 5년간 증감 반복, '20년에는 소폭 감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리노숙인 수(명)*	1,125	969	862	895	1,246	1,241
전년대비 증감(%)	-	13.9% 감소	11.0% 감소	3.8% 증가	39.2% 증가	0.4% 감소
목표	전년 대비 2% 감소					
목표달성 여부	-	달성	달성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 매년말 지자체별로 일시집계하는 행정자료 기준 거리노숙인 수

② (시설노숙인 수) '18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설노숙인 수(명)*	9,731	8,878	8,972	8,859	8,456	7,674
전년대비 증감(%)	-	8.8% 감소	1.1% 증가	1.3% 감소	4.5% 감소	9.2% 감소
목표	전년 대비 2% 감소					
목표달성 여부	-	달성	미달성	미달성	달성	달성

* 생활시설(자활시설과 재활·요양시설) 노숙인 수

③ (현장보호활동 관리비율)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보호활동 건수 지속적 증가, 관리 비율(거리노숙인 수 대비 현장보호활동 건수)도 향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리노숙인 수	1,125	969	862	895	1,246	1,241
현장보호활동 건수	-	1,101	1,317	1,461	1,912	4,107
현장보호활동 관리비율	-	114%	153%	163%	153%	331%
목표	-	80%	85%	90%	95%	100%
목표 달성 여부	-	달성	달성	달성	달성	달성

④ (주거지원 건수) '17년 이후 전년대비 20~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거지원 건수	653	460	599	721	876	2,786
전년대비 증감(%)	-	29.6% 감소	30.2% 증가	20.3% 증가	21.6% 증가	211.6% 증가
목표	전년 대비 2% 증가					
목표달성 여부	-	미달성	달성	달성	달성	달성

* 주거지원 건수: 임시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시설입소 등 주거지원건수를 전년대비 비율로 표기

III.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정책 목표

- 거리노숙인 등 대상 의료·주거·복지 지원 체계 구축
- 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정착 준비 역할 강화
- 노숙인 지원업무의 지역영역 간 불균등 해소 및 역량 제고

5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
2. 거리노숙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
2.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3. 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노숙인 인권 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

IV. 주요 정책과제

【추진과제 1】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 현황

-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한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노숙인 등의 분포에 따라 지역 간 **공공분야 지원체계 차이 발생**
- 코로나 19 유행의 장기화, 빈곤·실업률 악화 등으로 거리노숙인은 **다양한 위기상황 및 생존권 위협에 직면**

□ 정책방향

- 거리노숙인 현장보호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향후 지속되는 감염위험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숙인 위기시 **지원업무 체계화**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

① 현장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 거리노숙인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 구축(지자체,복지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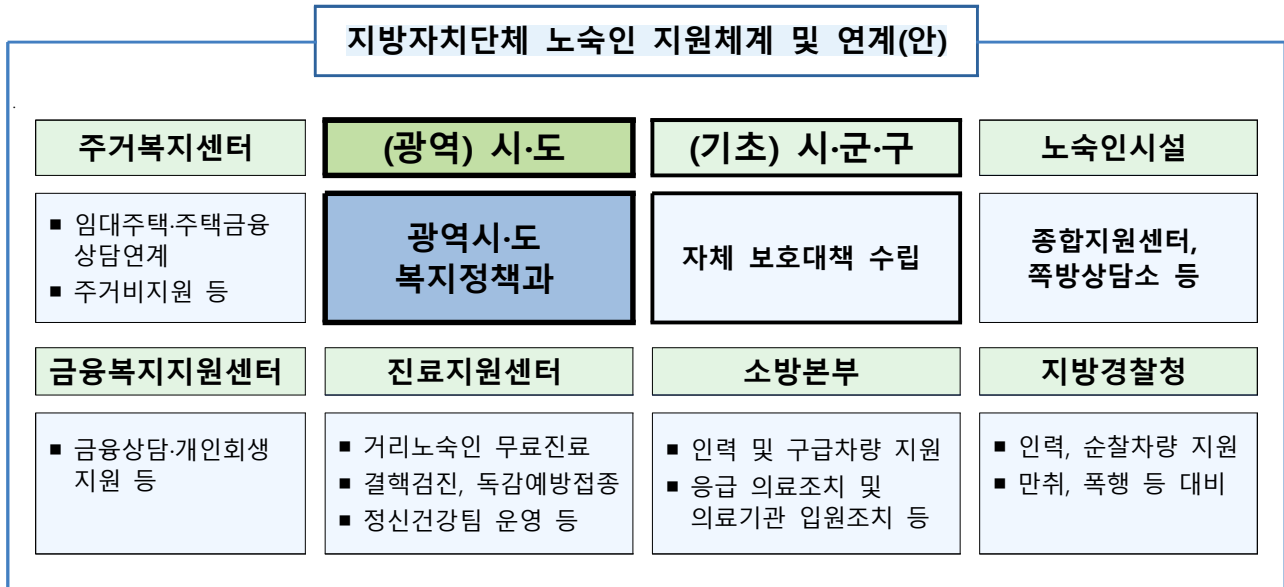
- 거리노숙인이 일정규모(40인*) 이상인 광역지자체는 방역 지원 및 응급숙소·급식서비스 제공 등을 **정부·지자체(광역)의 필수 역할**로 명시
- 지자체(광역)차원의 거리노숙인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 '21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규모를 40인으로 봄(서울·부산·대구·경기·인천·대전·충남 40명 이상, 그 외 시·도의 경우는 0~18명으로 조사됨)

○ 거리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복지부, '22~)

- 매년 행정집계 시, 거리노숙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현황 및 복지 수요 파악(지자체, '22~)

* (現) 노숙인(거리, 시설) 수, 시설 종사자 수 등 규모에 한정하여 집계 → (강화) 주거 취약 현황, 감염병 등 위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확대



② 거리노숙 지원 거점 확보 및 체계 구축(복지부,지자체, '23~)

- 광역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사업 내실화를 통한 거리노숙인의 위기지원 중심 역할 강화

* 위기관리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지역별 사업 내실화
(('21) 5개 시·도 6개 사업 → 시·도 수요·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 확대)

- 거리노숙인의 노숙현장에 인접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추진(지자체, '22~)

* (現) 10개소 개별운영 → 인근 광역권 일시보호시설 협력·연계 운영 도모

③ 정신건강 등 전문영역과 현장보호 지원 연계체계 구축

- 노숙인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을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기관** 지정 확대(복지부, '22~)

* ('21) 6개소 → ('25) 85개소 * ('21) 9개소 → ('25) 17개소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점진 확대 (복지부·지자체, '22~)

*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예방적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① 거리노숙 위기상황 시 지원체계 확대 구축

○ 거리노숙인 집중지원의 취약시기를 동하절기에서 감염병 확산 등 방역 위기상황까지 확대하여 대처 방안 마련(복지부, '22~)

- 응급보호 및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업무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
- 폭염·한파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수요 파악 및 대응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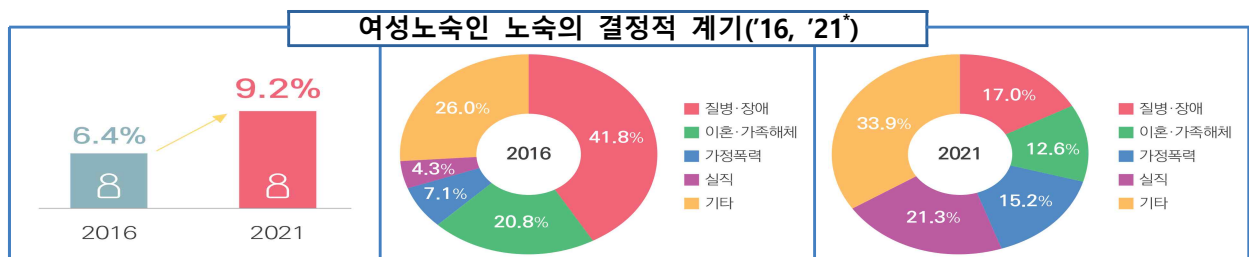
*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선제검사, 급식지원 대상자 및 수요 파악 등

○ 가정 밖 청소년 노숙위험 조기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서비스 연계 추진(여가부, '22~)

* 청소년쉼터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 가정폭력·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노숙위기 여성·청년에 대해 심리 서비스 지원 등 연계 강화(여가부,복지부, '22~)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연계 요청 시, 지역 '가족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지원



* ('16) 거리노숙 경험없는 여성노숙인 포함한 여성노숙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21) 거리노숙을 경험한 여성노숙인만 대상으로 조사

○ 지자체 내 노숙인 '인권옹호관' 배치 권고 및 모니터링 실시(지자체, '22~)

* 지자체 인권담당관실 직원 등으로 "거리노숙인 인권옹호관"을 지정하여, 거리노숙인 대상 인권침해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모니터링 책임 부여

② 기본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거리노숙인의 급식,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지자체, '22~)
 -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시설 노숙인 진료 어려움, 민간 급식 중단 등에 대비 지자체 주도의 서비스 확보방안 마련
 - * 거리노숙인이 40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광역시)를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 확대 제공
- 무료 급식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지자체, '22~)
 - 각 지자체별 무료 급식시설(공공 및 민간)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 이용 실태 파악 후 사례관리를 통한 노숙 예방
- 노숙 위기에 대응에 대한 위기가구 관리사업 강화(지자체, '22~)
 - 빅데이터 기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노숙생활 진입 예방 강화
 -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 확대 (34개→39개), 지자체 자체발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20~'22년)
 - 퇴거 등 노숙위기상황 발생시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긴급주거지원 등으로 위기 해소
- 노숙인 등의 금융·법률서비스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행복e음 서비스의뢰* 기능 활용 활성화(지자체, '22~)
 - * 금융(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고용(고용복지+센터) 분야 서비스 의뢰 가능

【추진과제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 현황

- 노숙인의 건강수준은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거리노숙인의 미충족 의료문제가 '16년에 비해 악화**

* 전체인구 대비 4.3배의 결핵발생률(10만명 당 165.5명) 보고 등

** 전체 노숙인 등의 우울증 의심정도는 개선되었으나(('16)51.9% → ('21)48.4%), 거리노숙인은 여전히 심각(('21)64.3%)하며, 미충족 의료비율은 악화(('16)31.0% → ('21)42.6%)

- 기존 종교·자선적 방식에서 공공의료적 접근으로 전환 중이나 **지역별 편차** 발생, 감염병 위기 시 **진료 공백 발생 우려** 등으로 **중앙차원의 의료지원체계 검토 필요**

□ 정책방향

-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활용현황 검토 등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추진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필수의료자원 확보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필수보건의료 공백이 없도록 **책임의료기관 확대***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대상 **필수의료 연계 협력** 추진(복지부, '25~)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공공병원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로 지정 확대 추진,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 수행

- **거리노숙인 주요 밀집지역**에 필수 의료자원 배치(지자체, '22~)

- 거리노숙인 **40명 이상** 주요 밀집지역*에 노숙인 **현장진료센터** 설치 및 지역 공공병원과 연계**

* (現)서울 무료진료소 2개소 등 → 거리노숙인 일정규모 이상 광역지자체 설치·확충 권고

**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연계를 통해 무료급식소를 통한 주기적 건강체크, 무료 이동진료사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 지속 수행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현장 진료센터간 MOU를 체결하여 종합지원센터 아웃리치 활동시 진료연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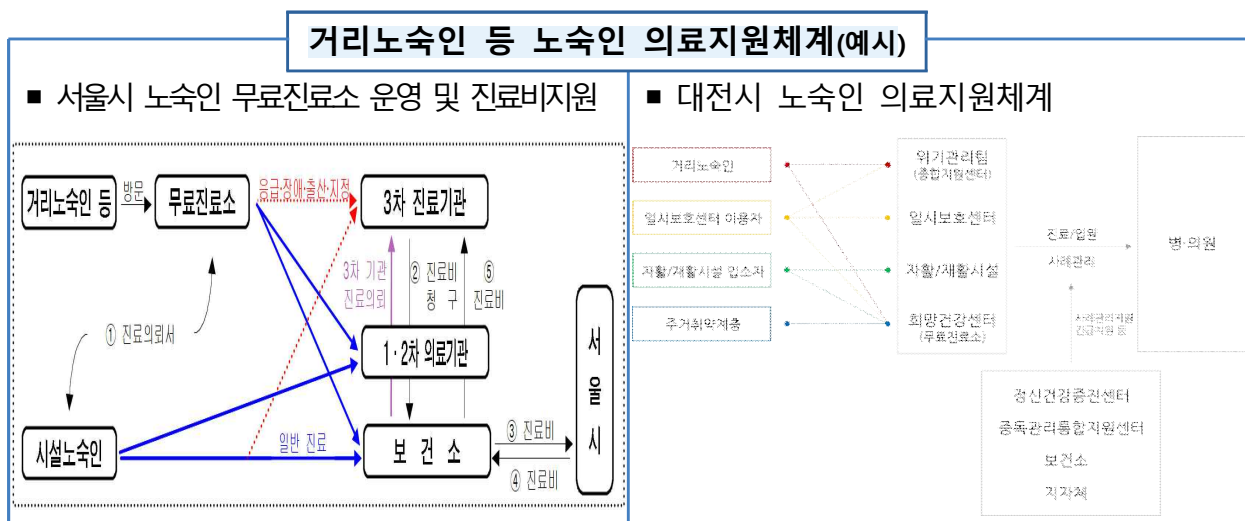
-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대상 의료 제공 확대(복지부, '22~)

*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대상 진료 제공

- 시설노숙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복지부, '22~)

-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의뢰를 통해 노숙인 정신건강 교육 제공 및 심리지원 실시

- 쪽방거주자 방문 진료 연계로 건강관리 강화(지자체, '22~)



2 의료지원 현황 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복지부, '22~)

- 노숙인의 의료급여, 지정병원 이용 등 의료지원 활용 실태 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추진

- 노숙인 의료급여·진료시설 지정 현황 분석, 공공병원이 부재한 지역의 의료공백 등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별 무료진료소 및 공공의료 자원, 지자체 지원 규모 격차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제한 등을 파악하여 접근성·질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시스템 개선('23 이후)

- 시설 노숙인의 건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상 건강관리기준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분야 기술자문 등을 통해 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개선안 제시(예: 치과, 결핵관리 의사 등과의 진료협약 추진 등)

①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지자체의 보건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지자체, '22~)
 - * 지자체·민간협회에서 거리노숙인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상담·홍보, 동의하에 백신접종 기관 이동 등 지원 실시
- 65세 이상 노숙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추진(질병청, '22~)
 - 종합지원센터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 등에게 접종 안내, 촉탁의가 지정된 재활·요양시설 등을 통한 접종 시행
- 노숙인시설 입소자·종사자의 집단감염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22~)
 - * 거리노숙인의 위기상황 대응지침 마련 시, 이용시설·생활시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포함(예: 격리공간 마련, 확진자 발생 시 치료시설 즉시 이송 명시 등)

② 노숙인 결핵관리사업 확대 및 안정적 정착(질병청, '22~)

- 노숙인 등 수요자 중심 방문검진과 통합적 사후관리를 통한 결핵 검진율 및 치료성공률 제고
 - 지자체, 검진 수행기관,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과 결핵검진 사업 담당 부처(질병관리청)간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지자체의 취약계층 보건의료자원과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결핵 환자 발견시 진단부터 완치까지 통합적 관리
- * ('20) 노숙인 22만명을 목표로 검진 실시 → 15,777명 검진(검진율 72%), 환자22명 (환자발견율: 인구10만명당 139.4명)

【추진과제 3】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 현황

- 주거지원(17.9%)*은 노숙인 등이 소득보조(49.2%)에 이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21 실태조사),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성 증대**

* 자활시설 입소자 34.7%로 가장 비중이 높고, 거리노숙인 22%, 쪽방주민 17.9% 등

**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으로는 일반주택 → 공동생활주택 → 지원주택 등의 순

- 지자체 '지원주택'을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거주지원 추진

* 정신질환·알코올·만성노숙 등 경험 노숙인에게도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노력

□ 정책방향

- 거리·시설 노숙인 및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모형 마련으로 노숙인 주거지원의 **다양성·방향 제시**

* 지자체 '지원주택' 등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다양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자립 추진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①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국토부)

-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20~'25. 4만호)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국토부)

- 쪽방주민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쪽방촌(서울역, 영등포, 대전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정비*하여 공공임대 입주 지원('22~)**

* 先이주 善순환 개발로 쪽방주민 등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약 2,500호) 공급

** 기존 쪽방(1.6㎡~6.6㎡) 대비 약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약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일시·응급보호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지자체, '22~)

- 숙소·위생공간을 공유하는 집단구조를 숙박업소 등을 활용한 개별 공간으로 보강

- 정부-지자체-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주거지원 협의체(가칭)' 구성·운영 (복지부 등 관계기관, '22~)
- 지자체·노숙유형·인구사회별 임대주택 수요예측, 공급계획, 실적검토, 주거관련 서비스의 지역 연계방안 논의, 우수사례 확산 등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1 입주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주택지원 확대·다양화

- 지역 자원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주택 발굴·확산 추진(복지부, '22~)
-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공급되는 임대주택 도입·확대*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 지원주택 사업 지속 추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운영조례 제정('18.5월),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196호) 및 건강·위생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운영조례 제정('21.8월)

서울시 노숙인 등 지원주택 운영(예시)

- 개요: 정신질환 노숙인 등 독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건강·위생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 * 추진근거: 서울시 조례, 지원주택 공급기본계획
- 대상 및 방법: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활용(원룸형 1인1실)
- 지원내용: 지원주택 입주연계·입주자 사례관리 지원(사례관리자 배치)

- 다양한 유형의 노숙인의 상황을 반영한 주택지원 방안 추진(지자체, '22~)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주택' 확산
- 쪽방주민 대상 주거상향을 위한 중간주택 공급 및 서비스 연계

대구시 “행복나눔의 집(17.8월~)”(예시)

- 개요: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및 자활 사업·일자리알선 서비스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주요사업: 쪽방주민들의 주거지원, 편의시설 제공 등(지하1층/지상3층)
 - * (1층) 세탁서비스 등 편의시설, 행복나무카페(교육·사회적경제),
 - (2층) 상담실·사무실, (3층) 지원주택(5실, 쪽방 → 매입임대주택 중간주택)

- 여성·청년 등 고용능력 향상 과정 중에 있는 노숙인, 여성 거리노숙인 대상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택 지원 등

- 독립적·안정적 생활을 위해 정부·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주택 개선방안* 마련(복지부, 지자체, '22~)

* 임대보증금, 입주 대기기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여성 거리노숙인 등 관련 개선방안 및 연계서비스 사례관리체계 개선 등

- 욕구기반 보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 연계 검토('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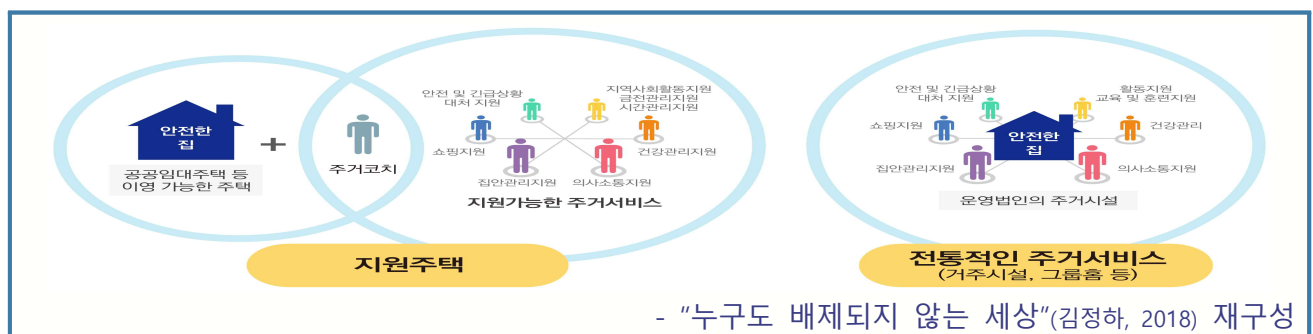
* 정신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내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상생활·건강·고용·주거지원 연계, 집중사례관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22, 5개 시군구 예정)

2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가칭)' 모델 마련

- 보건·복지 분야 취약노숙인(만성, 거리) 대상 필요서비스-주거 결합 서비스 모형 연구(복지부, '22~)

- 알코올·정신건강 등에 취약한 만성노숙인,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및 자활·고용이 필요한 청·장년 등 대상 주택과 필요서비스 연계 추진

* 지역별 기존 서비스 분석, 사례관리 체계 모형 등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가칭)' 모형 연구 및 모형 시범운영 지원 등



【추진과제 4】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 현황

-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역량습득 제공에는 한계****

* 정서지원·건강관리 등 사회복지 유도('16) 79개 → ('20) 174개)

** 자활시설 퇴소자 중 취업 퇴소는 25.2%('21)

- 노숙인을 위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 **일자리사업의 연속성 부족**

* 양질의 일자리 알선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고용부 노숙인 고용지원사업 폐지('20)

- 노숙인시설의 **유형별 전문성 제고 등 체계화 노력 필요**

*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 등('18)

* 재활·요양시설은 등록장애인이 60.2%, 병원 입원중 23.5%, 20년 이상 거주비율 36.6%

□ 정책 방향

- 단순 복지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서 **초기정착·재정착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도모**

* 지역단위 노숙인 지원 협의체(지자체-종합지원센터-시설-지역기관 등) 구성·활용

-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등 노숙인의 **욕구·상황에 기반하여 추진**

- 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환경 개선

4-1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

① 지역사회 준비 촉진 프로그램 실시

- 노숙인 특성 및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다각화(복지부,지자체, '22~)

- 여성·청년 등 취약노숙인의 자립지원, 자존감 향상 등 **사회재정착 프로그램** 발굴

* 노숙인 복지사업(공모)을 활용, 여성·청년 노숙인 등 지역사회 준비촉진 프로그램 발굴('22~)

- 노숙인의 욕구 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 **독립생활 역량 습득 프로그램 확대**(지자체, '22~)

- 노숙인 시설에서 지역사회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재정착 도모

* 대인관계기술, 자존감 향상(인문학 교육 등), 주거생활 유지 역량개발(공과금, 관리비 등), 금전관리 등

② **초기적응 및 재정착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지자체, '22~)

○ 노숙인의 지역 재정착 이후 필요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역단위 **노숙인 지원 협의체**(지자체-종합지원센터-시설-지역기관 등)를 구성, 노숙인 초기정착·재정착 사례관리 발굴 및 도모

* 지자체 사업공모(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를 통해 시설퇴소·사후관리 종결 시점에서 재정착 사례를 검토하고 협력방안 모색 등

○ 시설에서 지역사회 재정착 후 일정 기간(1년 내외)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 정신장애 노숙인을 위한 초기적응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교육 제공 지원 및 심리지원 확충**

* 입주지원 서비스(가구 구입, 임차인 권리점검), 정신 및 신체건강 관리, 여가생활, 구직 등 지원, 이웃-가족-퇴소노숙인 사이의 지원체계 구축 등

○ 생활시설 노숙인의 퇴소희망 여부 등 **주기적 확인·연계서비스** 제공

* 재활·요양시설의 경우, 장기거주로 지역사회 정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퇴소(희망) 여부 확인

① 중앙정부 노력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속 강화(고용부, '22~)
 - 노숙인 등 특정계층에게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상담 등)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II)')
 - *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직 노숙인에 대한 취업제도 적극 안내·홍보 실시(연중)
- 노숙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채널 구축(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22~)
 - 노숙인의 일자리-주거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채널 구축

(예)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 관련 인센티브 연계방안 논의 등

②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강화(복지부, '22~)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확대로 거리노숙인이 시설 입소 등의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 * 거리노숙인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3년 이상의 사업 참여 기간을 보장하고, 심리지원, 교육, 주거상향지원 등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 거리노숙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자활사업 참여 확대
- 노숙인의 다양한 욕구·상황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방안 조사 및 마련
 - * 거처형태별, 성별, 근로능력, 희망 일자리 유형 조사('23)

① 노숙인시설의 사회복귀 준비환경 조성(복지부, '22~)

- 노숙인생활시설의 실태 파악, 환경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한 노숙인 유형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노숙인생활시설 현황조사 실시 및 수면실 등 인원·시설 기준 개선('22~)
 - 지역사회 초기적응 및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확산('23)
-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잠자리 등)의 사생활 보장·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 사생활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시보호시설의 응급잠자리 기준 마련 등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시설 설치기준 개정 등, '23)

② 노숙인시설 운영환경 개선(복지부, 지자체, '22~)

- 규모별 시설의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소규모 자활시설의 표준 모형화 추진 및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 시설 입소자 유형별 필요서비스 제공 연계
 - 입소자의 요구 및 타유형의 시설 상황에 따라, 장애·정신·노령 등 유형별 전문 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 연결·이동 지원
 - * "노숙인의 욕구 파악 - 적절한 보호 및 지원체계로 연계 - 전문서비스의 수준 향상"의 선순환 가능 추진
- 노숙인 시설에 ICT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
 - * 노숙인시설 실태조사 시 ICT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수요 조사 및 시스템 운영 성공 모델 확산('23)

(예) 시설 내 IoT·AI기기(A이스피커, 호흡활동량·문열림 센서,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등) 설치 ⇒ 응급상황 시 시설 사무국 모니터링 기기에 데이터와 응급 알람을 전송 ⇒ 비대면·대면 신속 대응 가능

【추진과제 5】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현황

- 노숙인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노숙인은 지속발생하고, 여성거리노숙인 증가 등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 고려한 지원 필요
- 노숙인 복지시설(7개 유형) 운영사무의 지방이양 완료*로 지역간 노숙인 지원 정책 등의 격차 심화 우려
 - * ('05) 생활시설(자활), 이용시설(일시보호·급식·진료 시설 및 쪽방상담소) 지방이양, ('22) 생활시설(재활·요양시설) 지방이양
- 인권의식 향상,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노력으로 **노숙인 인권의 중요성 강조**

□ 정책 방향

- 노숙인 **인권교육 체계화, 실태조사 다양화** 등을 통해 **노숙인의 권리보장 강화**
- 다양한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 간의 협의·소통채널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체계 마련**

5-1

노숙인 인권 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① 노숙인 인권보장 강화(복지부, '22~)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 현재 시설종사자로 한정된 인권교육 대상을 관련업무 종사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 등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의 책임기관을 인권위 → 복지부 이관 추진(노숙인복지법령 개정사항)
 - ** 노숙인 인권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숙인 당사자 참여 교육 및 노숙인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 촉진 등

② 다양성을 반영한 노숙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추진

○ 거리노숙인 행정집계 보완·강화(복지부, 지자체, '23~)

-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연간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만성노숙인 및 의료접근성 실태파악 등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행정집계 외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수도권 지역의 조사방식 등을 준용)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지속 추진(복지부, 지자체, '22~)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16)」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및 침해 발생시 조치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례적 조사 실시

○ 다양한 노숙인의 현황 반영 등 실태조사 정교화(복지부, '24)

- 노숙인 실태조사시, 여성·청년 노숙인 등 배제되기 쉬운 집단의 욕구·대안 발굴을 위한 세분화된 실태조사 실시

* 여성·청년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굴 및 노숙진입 차단을 위한 아웃리치 등 서비스 체계 편입 지원안 도모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

① 노숙인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관계기관, '22~)

○ 복지부-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정책 발전을 위해 복지부-지자체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정기 회의 개최(분기별)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위한 협의 관계 구축

<참고> 복지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주체별 주요역할(안)

- (지자체) 지역내 노숙인 관련 현황, 현안, 우수사례, 협조 필요사항 등 공유·논의
- (복지부) 중앙정부-지역간 자원 등 연계, 장·단기 노숙인 정책 마련, 우수사례 확산 등

- **복지부-현장전문가 협의체**(‘노숙인 복지사업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의사 소통구조 마련(’22~, 반기별)
- 노숙인 등 관련 현안대응 및 정책지원, 자원 배분·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 분야별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참여

2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복지부, ’22~)

- 노숙인시설 및 현장지원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교육 제공
 - 전국 노숙인 업무 종사자 업무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 노숙인 업무 종사자 필수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교육 실시(’23~)
- 노숙인 시설 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추진
 - 업무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등에 기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및 연수기회 제공 확대
- 노숙인 복지지원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과관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

V. 성과지표

□ 연간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거리노숙인 수	전년 대비 2% 감소				
	▶ 연말 행정집계수치 기준				
노숙인 주거지원 실적	전년 대비 8% 증가				
	▶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포함) 공급 건수, 지원주택, 쪽방주민 대상 주거상향지원 포함				
	* 단, 주거지원에서 시설입소와 임시주거비지원, 임시적 자립주택 거주는 제외. 2021년 쪽방주민 포함 노숙인 등은 14,404명, 1년에 약 8%('21은 약 1,150명 해당)				
노숙인 지원 실적	해당연도 거리+생활 노숙인 4.5배				
	▶ 노숙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연계, 긴급복지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임시) 주거지원연계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의 실인원 수				
	* 노숙인 대상 지원 수치는 별도로 집계/발표되지 않아, 2021년 목표는 거리·시설 노숙인의 4.5배로 정함(연도별 추이를 살펴 목표 조정 필요)				

□ 향후 4년간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1년	2024년
만성 거리 노숙인 수(명)	30.0*%	24.0%
	▶ 최근 1년 이상 노숙생활의 지속, 반복한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 중 정신 질환·알코올중독 등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노숙인(Chronic Homelessness) 비율	
거리노숙인 미충족의료 감소율	37.5*%	25.0%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 중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	

* 실태조사 시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와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

VI. 향후 실행방안

1. 이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과 연차별 이행계획(중앙, 지자체) 연계 수립·시행 및 평가
 - 관계부처, 광역 시·도 대상 제2차 종합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과제별 소관부처는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제출 협조
 - 제2차 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분야 지자체 역량 강화 추진
 - 시행계획 평가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객관성·일관성을 강화하여, 노숙인 업무의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 도모

2. 민관 협력 및 논의 지속을 통한 차기 계획 수립

- 민관협력 노숙인 정책협의회 정기 운영 등 소통·협력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과제 발굴 및 기관간 역할 등 관계 정립
 - 노숙인 정책 민간협의체('21.末 반기), 중앙-광역 시·도단위 정책협의체('22. 분기) 등을 통해 이슈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제3차 종합계획('26~'30)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등 철저
 - 실태조사('24), 핵심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연구('25) 실시
 -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반영·법령 정비 등 차질 없는 일정 진행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소관
1.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			
	1-1-①	현장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복지부,지자체
	1-1-②	거리노숙 지원 거점 확보 및 체계 구축	복지부,지자체
	1-1-③	정신건강 등 전문영역과 현장보호 지원 연계체계 구축	복지부,지자체
1-2. 거리노숙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1-2-①	거리노숙 위기상황 시 지원체계 확대 구축	여가부,복지부, 지자체
	1-2-②	기본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1-①	필수의료자원 확보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지자체
	2-1-②	의료지원 현황 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복지부
2-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2-2-①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복지부,질병청, 지자체
	2-2-②	노숙인 결핵관리사업 확대 및 안정적 정착	질병청
3.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3-1-①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국토부,복지부, 지자체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3-2-①	임주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주택지원 확대 · 다양화	복지부
	3-2-②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가칭)’ 모델 마련	복지부,지자체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소관
4.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4-1.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 지원		
	4-1-① 지역사회 준비 촉진 프로그램 실시	복지부,지자체
	4-1-② 초기적응 및 재정착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	복지부,지자체
4-2.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4-1-① 중앙정부 노력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	고용부,복지부, 국토부
	4-1-②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강화	복지부
4-3. 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		
	4-3-① 노숙인시설의 사회복귀 준비환경 조성	복지부
	4-3-② 노숙인시설 운영환경 개선	복지부,지자체
5.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1. 노숙인 인권 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5-1-① 노숙인 인권보장 강화	복지부
	5-1-② 다양성을 반영한 노숙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추진	복지부,지자체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 역량 강화		
	5-2-① 노숙인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관계기관 등
	5-2-②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	복지부